

특임교수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예원예술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특임교수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특임교수라 함은 본교 석좌교수, 명예교수, 객원교수, 겸임교원, 연구교수 등에 관한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초빙교수로 본교 발전을 위하여 일정기간 연구, 강의 또는 총장이 부여한 특별업무 등을 담당하는 교원을 말한다.

제3조(임용대상자) 임용대상자는 국내외 교육(연구)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학술문화·예체능 단체의 임원급 및 각 분야 인사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박사학위 소지자로 교육 및 연구업적이 뛰어난 자
2. 정부기관의 고위직 공무원 또는 정부 투자기관 임원 경력자
3. 전문직 또는 각 기관의 임원급 인사로서 본교 학문영역에 대한 전문적인 실무경험이나 연구업적이 뛰어난 자
4. 기타 본교 특임교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제4조(계약 및 보수) ① 계약조건에는 직위, 주당 계약시간 및 임무, 계약기간, 보수와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한다.

② 특임교수의 임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③ 특임교수는 계약만료일 이전에 별도의 재계약이 없는 한 당연 면직된다.

④ 보수는 당해 본인의 업적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특임교수 개별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임용절차) ① 특임교수는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6.8.22.>

② 특임교수 추천서는 학기 개시 전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교학지원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구비서류) ① 특임교수 임용에 필요한 서류는 각 호와 같다.

1. 추천서
2. 이력서 및 연구업적 목록
3. 학력 및 성적증명서
4. 재직 및 경력증명서
5. 주민등록등본
6. 기타 임용에 필요한 서류

② 제1항의 구비서류 중 일부는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제7조(복무) 특임교수는 계약서의 조건에 따라 복무하되, 계약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교직원 복무규정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처우) 특임교수에 관한 처우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제정 2015. 1. 13)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6. 8. 22)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